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9. 27(금) / 총1매(본문1)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당자	·과장 신광호, 사무관 김세묵 ·☎ (044) 201-342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검토, 중부위 심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

-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사전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.
 - 이의신청검토위원회는 지역별로 감정원 뿐만 아니라 해당 시·군·구 및 세무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검토하였으며,
 -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3일의 심의기간을 부여하여 각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 것입니다.
-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심의위원들이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, '19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 관련 심의 시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심의위원들은 없었습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MBC 뉴스데스크, 9.26.(목)) >

- ◆ 공시가 통째 4억원 뚝...이의신청 안하면 바보?
 -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조정(안) 심의가 줄속으로 진행
 -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하려고 해도 비협조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묵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